

정책제언

# K-학년제 도입을 위한 쟁점과 대안

 정 영 모 | 극동대학교 교수

K-학년제는 유아교육과 돌봄의 일정 기간을 국가에서 책임짐으로써 모든 아동의 공정한 출발점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유아교육과 돌봄의 무상화, 누리과정 개발 및 적용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K-학년제 도입 논의를 통해 그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보다 진지하게 하고, 무상보육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하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취학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K-학년제 도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추진 배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우선 교육적 측면에서 유아기의 교육적 경험이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아기에 형성되는 애착이나 긍정적인 감정이 아동의 발달에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영향을 준다거나(Young & Klosko, 2009), 유아기의 질 높은 교육 경험은 이후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주어 직업 세계로의 이행까지 영향을 주며(교육부, 2018), 5세에 이루어진 성과는 2~3년 동안 유아교육(ECE)을 받은 학생이 1~2년 동안 받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OECD, 2017).

다음으로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효과이다. 영유아기 교육 투자 효과로 인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점(Cunha, F., etc., 2005), 막대한 양육 부담이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소영 외, 2018),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서영주 외, 2009) 등이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 체제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을 강화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상교육을 보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6.1%의 국가(41개국 중 23개국)에서 초등교육 이전 1년을 연계 학년으로 제공하며 그중 47.8%의 국가(23개국 중 11개국)에서 연계 학년을 의무화하고 있다(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 2017).

이와 같은 국내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은 다소 견해 차이가 있다. 도입 형태, 대상, 학제, 운영 방법 4가지 측면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도입 형태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상은 어떠한 연령대를 제도에 편입할 것인가, 학제는 초등학교 내 편제 또는 유아교육 체제 내 편제, 운영 방법은 교육, 돌봄, 행·재정 지원체계에 관한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림 1] K-학년제 도입의 주요 쟁점



위의 그림을 보면 4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대안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정책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예컨대 만 5세를 의무교육제도로 운영하고 K-학년을 초등학교 내에 편제하여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되 교육부가 이를 관장하는 방안, 3~5세 무상교육을 유아교육 체제 내에 편제하여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K-학년제 도입을 위한 대안 선택은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도입 형태 측면에서 보면 의무교육을 선택하는 경우 교육기관 별 차이를 최소화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보호자에게 아동 취학의무를 지우는 것이기에 부모의 자유를 제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무상교육은 현행 전달체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연령에 속하는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만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유아교육 기관별 격차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교육격차 해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문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정부재정 소요, 이원화된 유아 교육체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다. 일본의 의무교육과정 논의를 살펴보면 유아에 대한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유리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일본 문부과학성, 2021). 정부재정도 문제이다. 현재 3~5세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과 학부모 부담금이 각각 4조 원씩 투입되는 것을 고려할 때 어느 수준까지 재정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 되어 있기에 특정 연령대에 의무교육이나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특정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학제에 대한 부분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초등교육과의 연계, 출생아 수와 관련이 있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와 분리해서 교육을 받게 할 것인지,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여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출생아 수 급감에 따라 발생하는 유아교육 기관 폐원 가속화 문제와 초등학교 유휴교실 발생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소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79%로 정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면 초중등 교육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는 딜레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운영 방법은 유아교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교육에 한정할 것인지 돌봄까지 확대할 것인지, 행·재정 지원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문제이다. 현재 유아교육 운영현황과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면 교육 이외에도 돌봄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쟁점들은 정책결정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지 쉽지 않게 한다. 하지만 대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K-학년제 도입을 위한 목적과 철학을 분명히 하고, 인구 및 사회환경 변화를 대안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 의무교육과정 도입의 목적과 철학이 분명하고 다양한 이해집단이 이에 동의할 때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별 유아 인구 및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책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누구나 유아교육 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하고,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 간 격차 해소, 유아교육기관 교원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 등 유아교육과 돌봄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_정영모 극동대학교 교수

정부동향

농촌진흥청

## 청년농업인 체감형 지원 사업으로 성장·발전 뒷받침

- 농업 인재 양성·청년층 농업 진출 확대 위한 마중물 -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농업 인재 양성과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정착 초기 또는 정착에 접어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경영전문지도(컨설팅), 농업정책 및 지원 사업 정보 제공, 창농(創農)·창업지원, 공동체 육성을 추진 중이다.
  - 아울러 각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지방 농촌진흥기관·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 **(전문교육·경영 전문지도) = 청년농업인을 예비기, 준비기, 정착기, 성장기로 분류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 예비기에는 잠재된 농업 인재 발굴을 위해 한국4-H본부와 연계하여 청소년·대학생 4-H회원을 대상으로 농심(農心) 함양과 농업 분야 취·창업 교육, 농업 미래 비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준비기 교육단계에서는 예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전반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론교육과 선도농가 현장실습, 농업기계 입문 등 다양한 실습교육을 실시해 안정적 정착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정착기에는 교육 대상자별 영농 정착 수준에 부합하는 품목별 기술교육, 경영진단 분석, 농식품 창업교육을 운영해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성장기 교육은 강소농교육, 농업인대학, 마이스터대학 같은 기존 교육과 연계를 강화하고, 농산물 가공·판촉(마케팅)·수출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정보제공 서비스 활성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농업인과 영농 정착 또는 독립 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정 정책과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똑똑! 청년농부(www.rda.go.kr/young)」 누리집을 개설했다.**

  - 지난해 12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 누리집은 정부·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의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 교육정보, 창업정보, 농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앞으로 누리집 이용 실태 점검과 방문객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이용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 **(창농·창업 지원) = 청년농업인의 창농 지원을 위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을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하고, 창업 지원을 뒷받침 하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참신한 생각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은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조직체가 선도농가의 우수한 기술을 전수받아 기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으로 현재 전국 8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현재의 영농기반을 토대로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 농산물 가공기술, 농촌자원을 접목해 농업·농촌·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역량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달라지는 농업 경향에 맞춰 지원 유형을 다양화하여 우수한 생각을 가진 청년농업인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 **(청년농업인 공동체 육성) = 농촌진흥청에 속한 비영리 청년농업인 학습단체인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의 신규 회원 모집과 활동을 지원하고, 식량·원예·축산 품목별 연구 모임체 구성을 확대해 청년농업인 공동체 육성을 추진 중이다.**

  - ‘한국4-H중앙연합회’ 회원은 전국에 약 7,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으며, 지역별로 정기적인 회의, 교육, 행사에 참여해 정보 교류와 영농 전문 역량을 키우고 있다.
  -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농업 인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 한우, 쌀, 시설채소 같은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청년농업인들의 소통과 교류를 돕기 위해 품목별 연구 모임체 결성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농업인들이 인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임체를 다양화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 디지털 비대면 민원 서비스와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한다

- 행안부 2022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각 행정기관 안내 -

-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 중앙행정기관 46개, 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
-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기본지침을 마련·통보하고,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을 근거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2022년도 3대 추진과제는 ▲국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이다.

### [과제 1. 국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 올해 7월부터는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본인 확인 등 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부터 서울 서부 및 대전 면허시험장(소관 경찰서 민원실 포함)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다.
- 생애주기별 통합(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정부24’에서 제공되고 있는 6종\* 서비스에 ▲다문화가족 지원 ▲장애인 지원 ▲노후생활 지원 ▲취업서류 일괄 제출 등 4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확대된다.
  - \*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안심상속,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전입신고플러스
-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개인맞춤형정보(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처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과제 2.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 민원처리법상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명서류와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등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 서비스 기반이 더욱 강화된다.
- 또한, 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의 경우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으로 확대 설치하고, 미설치된 지자체에 대하여는 설치를 장려할 계획이다.
-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각 기관별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을 증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 [과제 3.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

- 최근, 디지털·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결혼 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 민원실에 안내요원 배치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창구 설치를 확대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 등의 생활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현행 『신설 민원 사전영향 평가제』를 강화하여 신설 민원에 대한 타당성 및 구비서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국민과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이 함께하는 생활 속 불편 민원 정비를 통해 기존 민원사무에 대한 일제 정비를 매년(현행 2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22곳 지자체 앞장

- 친환경가방 제작 및 시멘트 소성용 연료 활용 등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첫 지원 -

- 폐현수막으로 친환경 가방을 제작하고, 시멘트 소성용 연료로 활용하는 등 전국 22개 시·군·구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다.
- 행정안전부는 수거한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22곳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모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2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 행안부는 재활용, 디자인, 옥외광고 분야 등 내·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3.3.)를 진행한 결과, 신청한 22개 지자체\*의 사업내용이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22곳 모두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 22곳 지자체 : 경기 5(오산, 평택, 화성, 시흥, 하남), 경남 4(창원, 통영, 김해, 거창), 전남 3(광양, 구례, 해남), 서울 2(강북구, 노원구), 부산 2(서구, 부산진구), 전북 2(전주, 김제), 대전 1(중구), 강원 1(원주), 충북 1(청주), 충남 1(태안)
- 22개 지자체에서 신청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친환경가방(에코백), 모래주머니 등 생활용품 제작(12건), ▲시멘트 소성용 연료 활용(5건), ▲작업장 및 수거함 제작(2건), ▲우산(1건), ▲농사용 천막(1건), ▲공사장 차량 세륜(1건) 등 6개 종류이다.
- 선정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전북 전주시의 ‘폐현수막 재활용(업사이클링) 교육으로 명품제작 사업’은 현수막을 활용한 친환경가방(에코백), 휴대용컵 가방(텀블러백) 등 생활용품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고, 제작된 생활용품을 재래시장 등에 배부하는 사업이다.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대, 장바구니 제작 교육을 실시하여 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제작된 생활용품의 일부를 재래시장, 학교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 경남 통영시의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 제작 사업’은 통영시, 방수업체, 우산제작업체 간 업무협약 사업으로 진행된다.
    - 통영시에서 현수막을 제공하면, 원단 제작업체는 방수처리 및 시정로고 도안을 하고, 우산 제작업체는 우산살을 조립 생산하여 통영시에 납품한다. 납품된 우산은 시청 부서 업무용이나 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한다.
  - 부산시 서구의 ‘지역 예술작가와 연계한 친환경가방(에코백) 제작 사업’은 지역 예술작가와 협업으로 운영된다.
    - 구청에서는 현수막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작가는 현수막에 도안을 그려 친환경가방(에코백)을 제작하게 되며, 제작된 친환경가방(에코백)은 각종 행사에 제공된다.
- 아울러 최근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 게시된 다수 현수막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선정된 지자체 22곳에 1천만 원 한도로(총사업비 1억5천6백만 원) 사업비를 신속히 교부했다.
- 22곳 지자체 이 외에도 오는 5월, ‘2차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신청을 받아, 6월 1일(수)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게시되는 현수막도 폭넓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행안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현수막을 다양한 아이디어로 재사용하여 탄소중립에 앞장섬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브리프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박재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외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추진전략과 관련한 추진과제로서 경찰의 분권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 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별도 경찰기관의 설치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로의 인력 이관이 없이 국가직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임

자치경찰의 도입 목적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에서 자치경찰의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의사결정과 서비스 집행이 시·도 단위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모델로 진화해 가야 함

## ○ 개선방향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의 실질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자치경찰 정책 수립 및 운영, 자치경찰 통제, 국가경찰과의 협의 및 조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시설·인력·예산이 지자체로 완전하게 이양되어야 하며 완전한 자치경찰제로의 진화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함

### 주민참여 및 지방행정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특성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의 발굴이 중요하며 주민의 거주지역 유형별로 자치경찰 시책을 달리할 수 있을 것임

주민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우리 동네 치안은 우리가 책임진다' 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전략

### 전략 요인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전략 요인으로 의사결정 권한 요인, 서비스 집행 요인, 연계성 요인을 구성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권한 요인의 세부 요인은 자치경찰 조직, 인사, 예산, 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경찰의 서비스 집행 요인의 세부 요인은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 사항을 포함하고 연계성 요인의 세부 요인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와 자치경찰과 주민참여의 연계 사항을 포함함

### 의사결정 권한 요인

의사결정 권한 요인은 다음 10가지로 세부 전략 및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표 1] 의사결정 권한 요인 - 세부 전략 및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

전략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
소극적 대표에서 적극적 대표로의 전환	• 자치경찰위원 중 여성 및 인권전문가의 비율 확보를 위해 할당제 등 위원추천 방식 다각화
감찰 요구 권한의 실질화	• 경찰법 개정을 통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감찰권 부여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정보 공유	• 인사통계, 범죄통계, 교통관리, 112통합시스템 상 정보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적으로 공유
독립적 인사권 운용 시스템 구축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 승진 또는 징계 심사, 근무성적 평정 등과 관련한 절차 마련 • 신규채용과 면직에 대한 권한 부여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권한 부여
심의 의결 절차 개선으로 인한 인사 운영의 효율성·적시성 강화	• 서면 의결, 위원장 결재 또는 사무국장 위임전결 조치 후 위원회 추인 의견을 얻는 방법 등 법령상 재량 규정 마련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명확한 분류	• 자치경찰사무 비율에 관계없이 시·도경찰청 자치경찰부의 직제와 정원을 기준으로 자치경찰부 소속 경찰 공무원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분류 • 자치경찰부 안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
성과평가 체계 내 자치경찰 지표 기준 강화	•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부서, 경찰서장 평가 및 인사 반영 기준 설정 및 강화
중앙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	• 지자체 스스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와 신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복지예산의 전향적인 검토	•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경찰 공무원에게 시·도 공무원에게 준하는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시·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집행 절차 개선	• 자치경찰 맞춤형 예산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서비스 집행 요인

서비스 집행 요인은 다음 2가지로 세부 전략 및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표 2]서비스 집행 요인 - 세부 전략 및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

전략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
초기 경험을 반영한 자치사무의 범위 재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법 또는 대통령령 수준에서 재정리 필요</li> <li>(가칭)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 제정시 반영</li> </ul>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경찰 시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자치경찰 사무발굴</li> <li>주민참여 및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 서비스 효과성 강화</li> </ul>

### 연계성 요인

연계성 요인은 다음 5가지로 세부 전략 및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표 3]연계성 요인 - 세부 전략 및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

전략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
안전·복지·주거 환경 등 영역에서 지방행정과의 적극적인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있어서 지자체 복지행정과의 연계</li> <li>도시 및 농촌지역의 안전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 도시계획·주거환경과의 연계</li> </ul>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와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협력에 기반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개정 및 범죄취약계층 지원 근거 조항 마련</li> </ul>
주민참여 플랫폼 구성 및 주민참여 조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모임과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li> <li>주민참여조직(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과 주민참여 기반 협력사업 추진</li> </ul>
주민참여 유인 정책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에 주민자치 조직 대표자 포함</li> <li>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을 통한 지속 가능 참여 유인</li> <li>주민자치조직의 지속적 활동에 대한 평가</li> </ul>
민주적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의 자치경찰 시책 발의 및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시스템 구축</li> <li>자치경찰위원 선정 방식 다각화 및 자치경찰위원장의 주민 직선제 입법화</li> </ul>

###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과제

#### 자치경찰 법령의 정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균형을 이루는 (가칭)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형해화된 권한을 실질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 자치경찰 조직 및 인력 진단

경찰청 본청의 조직진단을 통해 국가경찰 인력 재배치 및 효율적 인사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의 이동·승진·전보에 있어서 차별에 대한 심리적인 우려를 불식시켜야 함

-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 정원을 대폭 충원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자치경찰 사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 마련도 필요함

### 자치경찰 사업비 확보

지역에 특화된 치안 시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치경찰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 경찰교부세 신설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이 설계되어야 함

-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지역맞춤형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의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 자치경찰 사무 기준 개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기준을 손질하여 국가 및 지방행정의 업무를 자치경찰에 전가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함

-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서 지역별로 세부적인 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가 분석되고 현장에서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임

### 정책 과정에 주민 관점 반영

주민의 관점이 치안 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들어 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교육 및 주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성해져야 함
- 주민자치회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치안정책 수립과 읍·면·동장으로서의 행정권한 위임 확대를 통한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실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_ 박재희 부연구위원외

알기쉬운정책용어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 Q&A

## 공공재정환수법이 궁금해요!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해당 카드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구 시, 다른 법률에 환수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환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따르고,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체납처분, 명단공표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알기쉬운정책용어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지침(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없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에 명시된 법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요, 고시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이라 하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시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2조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지급근거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알기쉬운정책용어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나요?**

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오지급)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 참고로, 다른 법률상 환수규정에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자 부과없이 환수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